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 일자			※ 접수 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김정희 (인권운동사랑방)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REDACTED]
	주소 (소재지)	[REDACTED]		
	신분	<input type="checkbox"/> 일반개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수·교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보 내용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①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②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③ 연구소에서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④ 연구소 설립 이후 년도별 이적성 감정 건수 ⑤ 연구소의 감정결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적·문서 등의 목록 ⑥ ⑤의 목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⑦ ⑥의 재판결과 ⑧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논문·서적 등의 목록 ⑨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집행 내역 2. 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 접수증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감시 <input type="checkbox"/> 쟁송관련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p>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0년 4월 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인 김정희</p> <p style="text-align: right;">경찰대학 총장 귀하</p>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공연 63720 -

수 신 김 정 희 (인권운동사랑방)

접 수 일 자	2000. 4.28. 11:00	접 수 번 호	1
청구정보내용	별첨 1		
공 개 내 용	별첨 2		
비공개(전부또는 일부 사유)			
공 개 방 법	직접공개	<input type="checkbox"/> 열 략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공 개 일 시	2000. 5. 9.	공 개 장 소	
수 수 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0년 5월 9일

공 안 문 제 연 구 소 장 (인)

<별첨1>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 ①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②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③ 연구소에서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 ④ 연구소 설립 이후 연도별 이적성 감정 건수
- ⑤ 연구소의 감정결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적, 문서등의 목록
- ⑥ ⑤의 목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 ⑦ ⑥의 재판결과
- ⑧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 논문, 서적등의 목록
- ⑨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집행내역

2. 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⑥ 이적성 서적, 문서 등의 목록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⑦ 이에 대한 재판결과

⑥, ⑦번은 당 연구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기소된 건수와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⑧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 논문, 서적등의 목록

당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공안연구와 공안논총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음.

⑨ 연구소의 연간예산과 집행내역

'98년, '99년, 2000년 예산 공히 59,978,000원

('97년 예산 73,046,000원 대비 10% 삭감됨)

2000년도 집행할 예산내역

- 관서운영비 47,256,000원

- 여 비 5,082,000원

- 업무추진비 1,622,000원

- 연구개발비 918,000원

- 자산취득비 5,100,000원

2. 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은 없음.

<별첨2>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① 연구소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법률)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24조(대통령령)

②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연 혁

- 88. 10. 20 공안문제연구소 설립 (대통령령 제12539호)
- 89. 1. 13 공안문제연구소 개소
- 95. 12. 7 직제개편(대통령령 14823호)

○ 목 적

-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장밑에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가 있음.

③ 연구소에서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당연구소는 관계기관에서 의뢰하는 문건에 대하여 이념적, 학술적 차원에서 분석할 뿐, 이적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④ 연구소 설립이후 연도별, 이적성 감정건수

⑤ 연구소 감정결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적, 문서등의 목록

④, ⑤번은 당 연구소에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적성 감정건수, 서적, 문서등의 목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비밀관리기록부(교화상 열독 부적당 도서목록 종합
시달) 사본

2000. 8.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허용구 

교 감 임 승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귀중

법무부 송무과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비밀관리기록부

을 제 / 회 정

부시명 : 모인제경과

보관체임지 : 허근수 (인)

관리번호	인월일	수	별	수신지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태	기	명	시본번호	예고문	처리담당	보관장소	세분류			첨	조		
														등	금	경			피기	피기
9840171	98.9.29	"	"	2836	48-1 61495	비밀	우서	간사	영조부령당	57	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시본함

답 변 서

사 건 2000구2331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정 희

피 고 검찰총장의 1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검찰총장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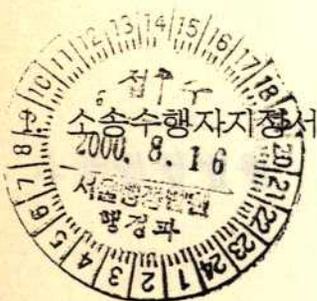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주장사실을 일응 모두 부인합니다.
- 2. 자세한 답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통





2000. 8.

위 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여 철 기



소송진행통보서

주소	주소
사건번호	사건번호
판결	다른 기판

이런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Blank space for details)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Blank space for details)
---	---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귀 중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135-080

전화 567-2316, 팩스 568-3439
전자우편주소 DUKSULAW@CHOLLIAN.NET

김정희 님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주소, 전화, 팩스번호가 변경된 경우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통보서

2000/08/19

원고 김정희

피고 법무부장관외1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구23316

재판부 행정2부 법정 212

다음 기일 2000/09/28

시간 P3:30

이번 기일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측

소장진술
갑1-3호증 제출

상대방측

각 답변서 진술

알리는 말씀

첨부서류

상대방 답변서 각 1부

담당변호사 김기중

사무국장 박찬대

담당직원 곽나영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0구233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정 회
 피 고 법무부장관 외 1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본안전 항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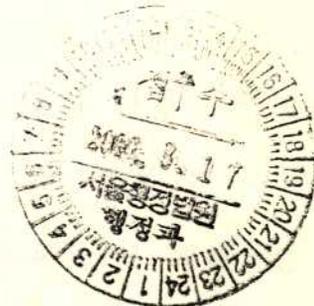
이 사건 소 중 피고 법무부장관이 2000. 5. 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결정(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관한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법무부 승무과

대전시 중양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본안전 항변

피고 법무부장관(이하, 피고라 함)은 원고의 2000. 4. 27.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5. 9. 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그 청구정보내용 중 “5. 민주이념연구소 외 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피고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의 내용

피고는 2000. 5. 9. 원고에게, 원고의 2000. 4. 27.자 공개청구 정보내용 중 (i) “3.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 결정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에 대해서는 “상기 목

법무부 송무과

대전시 중앙동 1번지 정부중앙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록이 포함된 문서는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 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ii) “5. 민주이념연구소 외 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적성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적시하면서 “공개”결정을 각 하였고, 이를 ‘정보부분공개’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나.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원고의 공개청구 정보내용 중 “3.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 결정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교화상 열독 부적당 도서목록”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반입되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도록 한 수용자 교화 관련 내부자료인바, 만약 이를 관계 직원이외에 외부로 공개할 경우 해당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어 ‘대외비’로 분류한 것입니다(을제1호증 :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참조).

그렇다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송무과

대전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다. 피고의 공개결정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개념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라고 규정(제2조 제1호 참조)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5. 민주이념연구소 외 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법무부가 이적성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중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송무과

대전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받는 이 : 김기중 변호사님

보내는 이 : 김정희 (인권운동사랑방, 741-5363) , 총 4매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자료

출처 : '98 국정감사 자료집 -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 민주이념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민주이념연구소」는 대검찰청 훈령(97. 1. 10. 제75호)으로 설립되어 있는 관계로,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필요시 검찰의 특수수사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주이념연구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연구소 업무에 전념할 전문연구위원이 필요하고 전문연구위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으로서 운영 예산의 확보가 전제조건이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민주이념연구소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으며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민주이념연구소의 주요 활동 사항?

=====

- 「민주이념연구소」는 북한의 대남도발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적표현물 분석업무를 체계화·전문화 함으로써 국내좌익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검찰의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건전한 우익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97. 1. 10. 대검찰청에 설치하였습니다
- 「민주이념연구소」는 97. 1. 10. 발족한 이래 이적표현물 총 202건 분석 그 중 이적성이 인정된 41건에 대해서는 산하 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하고, 123건에 대해서는 안기부 등 의뢰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분석한 문건 202건 중 유인물 110건, 도서 28건, 신문광고 11건, 비디오테이프 3건, 노래가사 50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 「민주이념연구소」 소장, 부소장, 자문위원, 상임·비상임 연구
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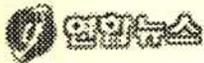
=====

○ 민주이념연구소는 소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부소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그리고 자문위원, 상임 및 비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문위원은 통일문제, 대공업무 등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 수는 10명입니다

○ 상임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공안담당 검찰연구관 6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비상임연구위원은 21명으로 전원 현재 공안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경력이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민주이념연구소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한총련 등 친북이적단체들로부터의 모함,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
등 업무의 특성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외부인사인 자문
위원들은 이름을 비공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명단을 공개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Society



2001.11.02 (금)

Home 연합뉴스 금융증권 경제 사회 지방 스포츠 정치 국제 언론외국 특약 문화

오디오 뉴스
English News

연합 투데이
인사 부음 동정

연합시론

독자마당

자유토론

여론조사

기사제보

Entertainment

유적뱅크

영화

Book&Book

TV연예

뉴스 매신저

기사검색

인물검색

비즈니스터

biz 컨설팅

사이버 서점

연합biz뉴스

서비스광장

날씨

오늘의 운세

복권당첨안내

경품대잔치

회원가입

연합뉴스 배너달기

회사소개

사진서비스

출판물 신청

SiteMap

• 법원

국내외 명저 아직도 '이적표현물'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문민정부 초기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국내외 명저들이 교도소내 반입 및 구독이 금지되는 등 아직까지 이적성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에 따르면 '민중과 지식인', '전환시대의 논리',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 교양인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국내외 도서들이 이적표현물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은 '민중과 지식인'은 90년대 중반까지 대학생들의 필독서로 꼽혔지만 92년 법원은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저서로 고교생들의 논술 교재로 애용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81년에 일찌감치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혔다.

또 지난 1월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은 故 전태일씨의 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90년,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지은 '전환시대의 논리'는 94년에 이적표현물로 분류됐다.

미 저널리스트 존 리드가 러시아 혁명의 현장을 기록, 르포문학의 진수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를 뒤흔든 10일'에 대해서도 법원은 86년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국혁명을 생생한 필치로 기록한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별'과 그의 부인이 지은 '아리랑'도 각각 85년과 86년에 이적표현물이 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채은아 간사는 '이제는 일반인들도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책들이지만 아직도 이적표현물로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도서를 비롯, 72년부터 95년까지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1천220종의 표현물에 대해 교도소내 반입 및 구독을 금지하고 있다.

phillife@yna.co.kr (끝)

국가보안법 7조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전문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② 삭제 <91.5.31>
-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찬양, 고무, 동조 등 죄】

이 조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는 행위'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이다. 주관적인 요소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가 요구된다. 원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은 처벌되지 않았으나 1991년의 개정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는 반국가단체(대개 북한)와 무관한 체제비판세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대체로 이 조항은 국민에게 정신적 중압감을 주며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

찬양, 고무 등 및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처벌된다.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조직한 계속적 결합체인 '결사'나 일시적 결합체인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적어도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는 갖춘 단체를 말한다.

*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례를 보면 거의 모든 단체들은 이적단체의 규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지 않고, 민주나 사회의 개혁을 강령으로 내세운다 해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적단체가 될 수 있다.

【이적표현물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죄】

찬양,고무등 및 이적단체구성가입 등을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소지,제작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이적표현물은 문서(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도화(민중미술계의 미술작품), 기타의 표현물(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이 해당된다.

* 특히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적단체 등의 혐의를 두고, 체포,구속하였다가 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적표현물'인 책 한 권을 소지한 이유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다. 1995년 불발에 끝난 박충렬, 김태년 간첩사건 등 사례는 많다.

*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는 공안문제연구소나 민주이념연구소 등 공안기관의 부설기관이 판정하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표현물은 수없이 많다.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학철의 <모내기>, 경상대 교수들의 <한국사회의 이해>, PC 통신상의 강릉 북한 잠수정에 대한 의혹 제기, 서준식 구속을 가져온 <레드 헌트> 상영 사건등).

국가보안법 7조의 운영실태

5공화국 당시 전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2,232명이고 기소된 사람은 1,565명이었다. 이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2,072명, 기소된 사람은 1,495명이다. 즉,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7조로 구속된 사람은 92.8%, 7조로 기소된 사람은 95.5%였다. 이런 5공화국 때의 비율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총 413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중 92.2%에 7조가 적용되었다.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국가보안법 죄목별 구속자

이처럼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은 거의 모두 7조에 의한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안보'나 '남북 대치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은 논리적인 구조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와 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조항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에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7조가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국제적인 인권단체나 유엔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은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또,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긴 구금기간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비판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명백하고도 현저한 증거가 없는 한,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양심수의 문제를 비판할 때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7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

* 단순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 구속;
대동출판사, 풀무질 출판사 대표 등/ 한양대생 하영준씨 컴퓨터 통신 표현물 게시 구속.

* 이적단체 주요사건;
국제사회주의자들, 북부노동자회, 부산인제대자주대오,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국학생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영남위원회, 울산대 혁신대오, 범민련,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등. 이들중 1심에서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남.

* 한총련 대의원의 대량 구속;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한총련 대의원 182명을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 기소함. 이는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44%에 해당함.

국가보안법 7조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먼저 7조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이 초헌법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옳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7조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18조(양심, 사상의 자유), 19조(의사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다.

개념의 모호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광범하게 남용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7조는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이 7조의 삭제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연락처 :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741-5363 전송 741-5364)

양산체제 갖춘 '사상 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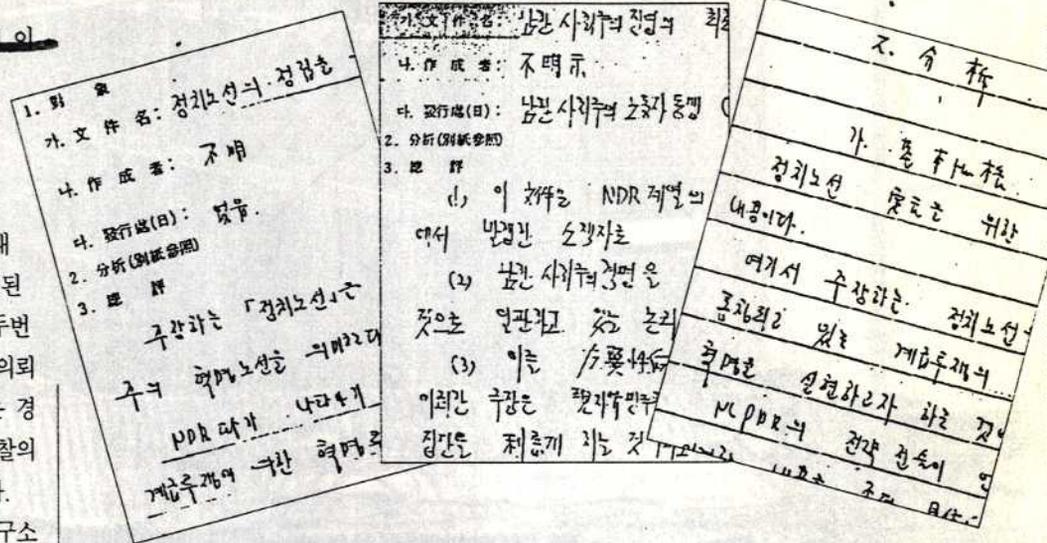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1명 하루 평균 2건 감정

경 상대 교수들의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가 세 번이나 감정체 이적서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안연구소가 이 책을 처음 감정한 것은 이 교재의 모판인 91년 발행 <제국주의와 한국사회>에 대해였고, 올해 초 <한국사회의 이해>로 개정된 뒤에는 연거푸 두번이나 감정을 실시했다. 두번째 감정은 지난 5월25일 안기부 관계자가 의뢰하여 이루어졌고, 7월11일의 세번째 감정은 경찰청이 공식으로 신청하여 이루어졌다. 검찰의 수사는 이 마지막 감정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올해 들어 실시한 1차 감정 작업은 이 연구소의 유○○ 연구원(38)이 담당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로 84년 스대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요지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새마을운동이 정부의 집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기는 했지만,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난 5월과 7월 <한국사회의 이해>가 좌경·용공이라는 감정서를 작성했는데, 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용공 판정'에 매달려 연구는 뒷전

경상대 교재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과 수사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소에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청이지만, 안기부도 비공식으로 감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집필자들인 경상대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이해>보다 4년 전에 발간한 <제국주의와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더 과격한 주장을 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최근에서야 전과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착수한 것은, 내용이 '용공적'이라는 점과 수사를 착수하는 시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판결문? 공안문제연구소가 사상을 감정한 감정서 사본들. 이 감정서들은 '익명의 장막'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도 한다.

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 결과가 좌익·용공으로 나오더라도 문건을 작성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보강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댔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익명의 장막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사저널> 제252호에 이미 보도했다. 그 후 연구원들은 일반 대학에 출강하던 '겸업'을 그만두었고, 최근에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는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출했고, 경찰청은 이를 기초로 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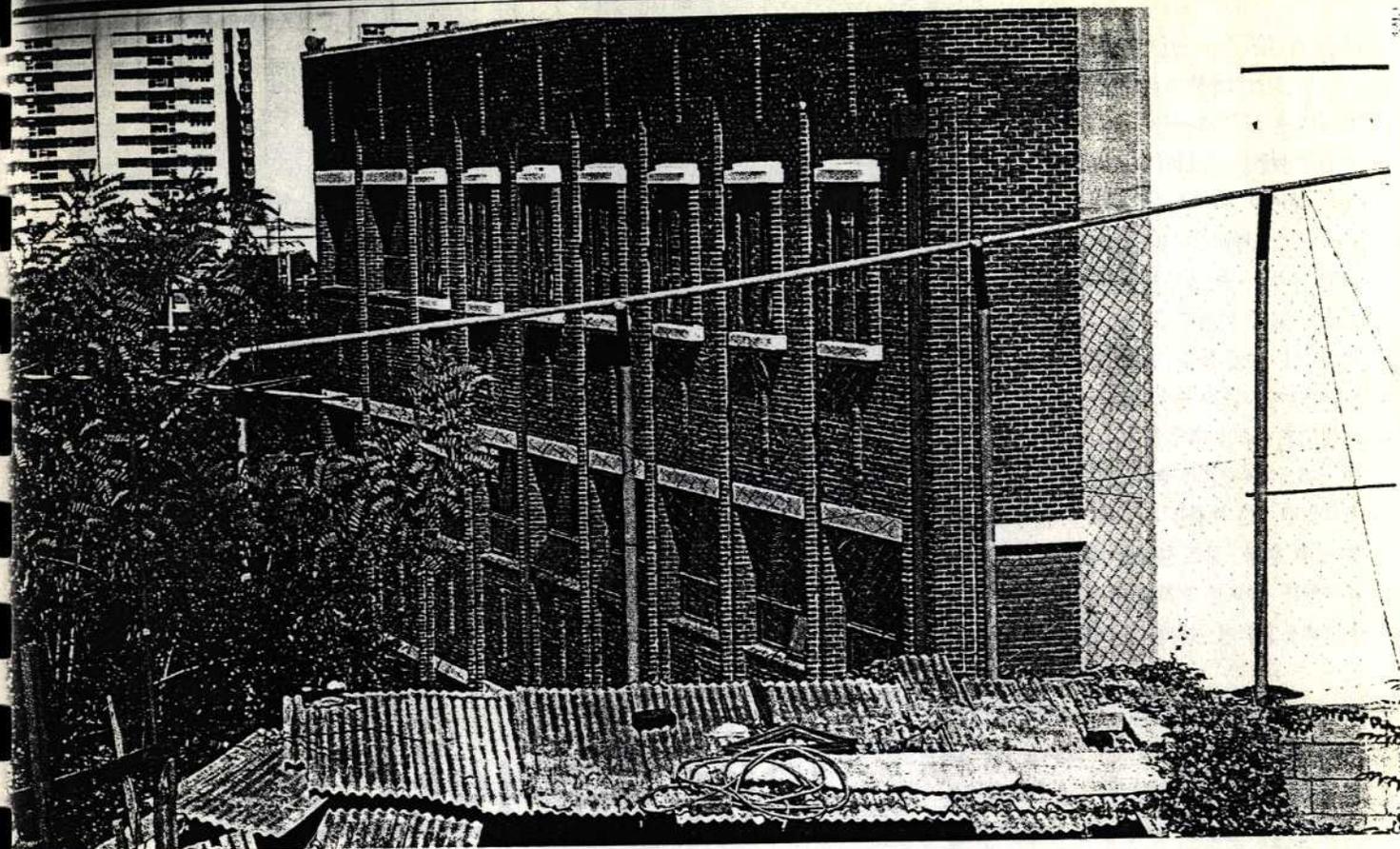
연구소가 제시한 개선안의 핵심은 공안문제연구소를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시켜 명실상부하게 경찰대학 부설 연구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편제상으로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이지만, 누구도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청의 지휘를 받으면서 감정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소는 '연구' 기능은 뒷전으로 미루고 사상 감정을 주업으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들은 가능하다면 대학(교직)으로 진출하려

는 사람으로서, 외부의 학문 세계와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 연구원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정균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연구소를 없애지 않고서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서는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와 증거 제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상태로는 공정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간 연구소에 의뢰하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 연구소는 89년 1월 경찰대학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 운영규칙 제11조 2항은 '소장은 연구소의 행정 사항에 한하여 학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안 문제에 관한 연구·감정·자료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의 조정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소가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사상을 감정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조항이다. 연구원들은 평균 하루에 2건씩 사상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업무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공안논총>과 격월로 발간하는 <공안연구>가 연구의 거의 전부인 실정이다.

현재 연구소 소장은 공직이고, 연구원은 모두



사상 감정소:서울 홍제동 주택가에 있는 공안문제연구소. 표지판도, 안내문도 없는 건물이다.

9명이다. 이들은 경찰대학 직원으로서 별정직 3급, 4급, 6급 공무원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6명이고, 나머지 3명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공은 심리학·정치학·교육학·사회학·국민윤리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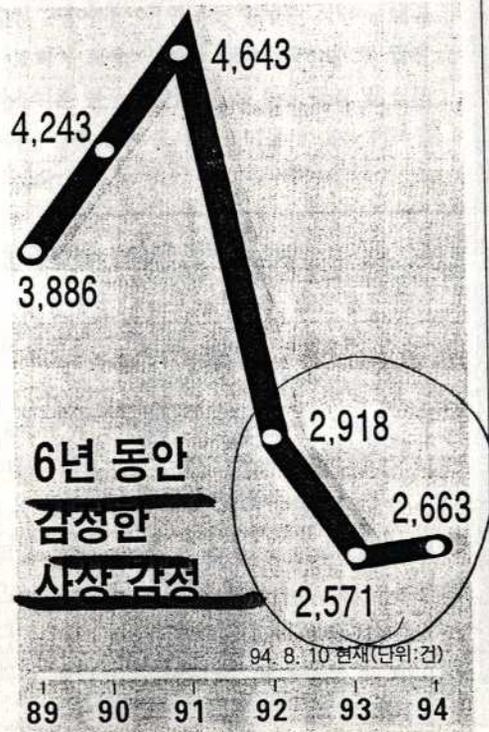
국가보안법 사건 예비한 '재고' 1만여 건

89년 이후 지난 8월10일까지 이 연구소가 감정한 건수는 2만1천에 달한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유인물로서 전체의 70%나 되고, 도서·간행물·테이프가 그 뒤를 따른다. 이들 문건에 대한 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문제없다'가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하고, '좌익·용공·친북'은 67%인 1만4천건, '반정부'는 17%인 2천4백건이나 된다. 주목할 것은 좌익·용공으로 분류된 1만4천여 문건 중에서 수사가 끝난 것은 수백 건밖에 안된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문건은 수사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이들 문건을 감정하는 것은 대부분 경찰청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념적 문건에 대한 분석을 이 연구소에 의뢰한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면

서 피의자가 소지한 문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가 좌익·용공·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되고, 이런 논리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것도 모두 좌익·용공·이적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소의 관계자는 "연구소는 문건이 좌익·용공인지 아닌지만 따질 뿐이다"라고 말한다. 좌경·용공으로 분류된 문건을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수용해야 하느냐 제재해야 하느냐 제재를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 13일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연구소의 활동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이 연구소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은 이번 기회에 독립적인 연구소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연 장막 속에서 운영되어온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개편 작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과 언론, 경찰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공부한 것이 서럽다"고 연구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공적인 개방의 자리로 나올때 그 '서러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朴在權 기자



달린 문: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보안문제연구소의 객관성과 개방성이 문제되고 있다.

불법 들킨 '보안연구' 지원

서울시, 보안문제연구소에 올해 1억4천만원 지출

91년 이후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보안문제연구소에 예산을 불법으로 지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보안문제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따졌다. 경찰청이 독립해서 나간 후에는 서울시가 경찰청의 예산을 거들어 주어야 할 근거는 없어졌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계속해서 매년 수억원씩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다. 올해만 해도 8월 말 현재 1억4천만원을 이 연구소에 지원하였다. 서울시 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91년 이후 보안문제연구소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해명했다.

보안문제연구소는 89년 10월 대공전수연구소로 처음 문을 열었다가 91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직제 및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이 없어졌다. 이 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에 소속되어 보안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장은 보안1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보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모두 8명이다. 실장은 오랫동안 대공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 총경이 맡고 있고, 연구원은 월남후 전향자가 3명, 군 정훈장교 출신 3명, 대공·보안 수사관 출신 2명이다. 이 연구소 업무는 시민에 대한 안보의식 교육,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급진 좌경이론 연구, 검거한 간첩 회유 공작 및 심문 지원, 각종 불온 도서와 유인물에 대한 이적성 분석이다.

'문제 없음' 판정은 겨우 4.4%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불온 문건을 분석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89년 이후 94년 8월 현재까지 이 연구소가 감정한 도서·간행물·유인물·테이프는 무려 4천5백8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문제 없음'은 겨우 2백1건(4.4%)이고, '좌익·용공 친북'은 모두 4천2백48건(92.6%), '반정부'는 1백38건(3.0%)이나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이장복 전국연합의장, 황인성 범민족대회 남측본부장 및 샘(고

등학생 모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룰 때도 이 연구소의 감정서가 활용되었다.

보안문제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를 비교하면, 우선 좌익·용공·이적으로 감정한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의 경력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의 경력과는 판이하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특징으로는, 올해 들어 사상 감정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예년에는 감정 건수가 한 해 평균 7백~8백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8월10일 현재 천건을 넘어섰다. 이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2기 출범식과 김일성 사망 이후 발생한 조문·분향 파동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신공안정국 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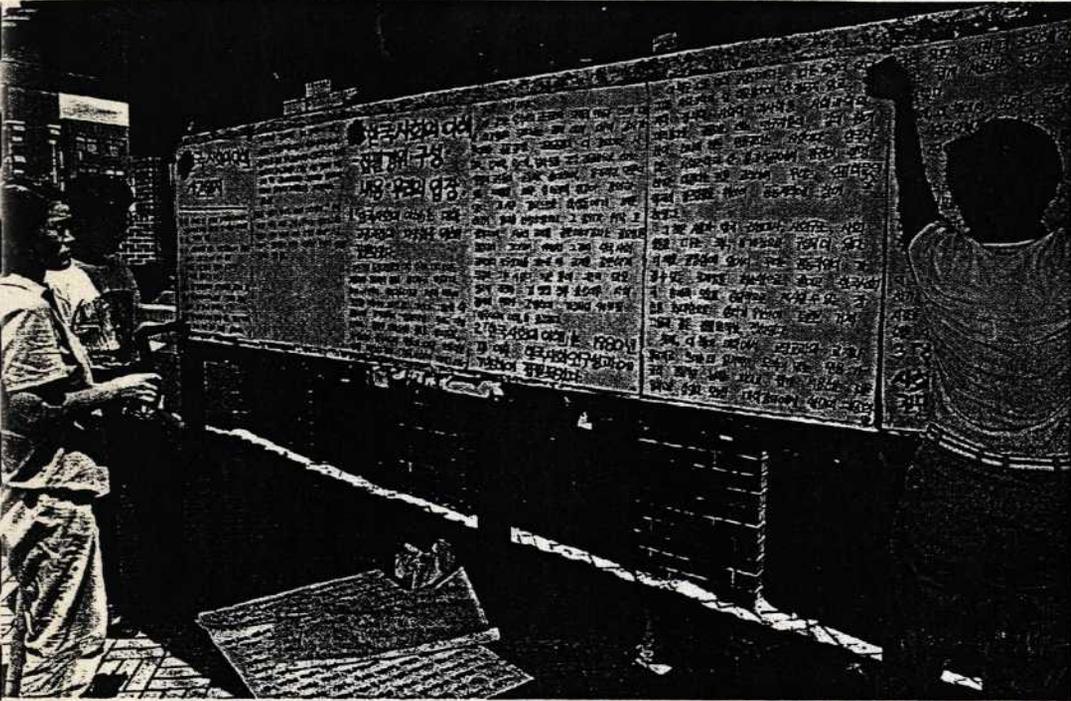
공안문제연구소 개편과 함께 보안문제연구소 개편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안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지금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객관성·공정성·개방성이 보장되지 않는 감정 작업이 장막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朴在權 기자



공안 수사가 남긴 상처와 절망

경상대 '이적성 교재' 사건 이후/내부 불신 깊어져 '끓어 터질' 가능성



◆ 간 상아탑:이적성 교재 시비는 깊은 좌절과 갈등만 남겼다. 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지난 여름을 휩쓴 공안 파동은 그후의 엄청난 부패 사건과 강력 사건, 대형 사고에 파문처럼 뒷전으로 밀려난 듯싶지만 이 파동이 대학에 남긴 상처는 아주 깊다.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사법 당국에 이적 교재로 지목받으면서 논쟁 무대의 한가운데로 끌려나온 국립 경상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적성 교재 시비로 상처를 입은 쪽은 역시 교재를 집필한 당사자들이다. 검찰의 소환 요구와 '장제 구인' 으름장에 줄곧 시달렸던 것이다. 또 소환 요구를 받아들인 8월30일 이후에는, 수사 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고 연구와 강의에 쏟아야 할 시간을 빼앗겼다. 사태가 진전되는 동안 이들이 받은 심리적 고통도 말할 나위 없다. 상처를 입기는 수사 당국도 마찬가지다. 8월 30일, 수사 당국은 교재 집필자의 대표 격인 정진상·장상환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여론으로부터 '공안 분위기에 편승해 공권력을 남용한 검찰이 스스로 체면을 구겼다'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적 교재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경상대이다. 직선제로 뽑은 총장이 갑자기 사퇴를 선언하는 통에 학사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가 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교재 집필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익명 투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그 사이 경상대가 심혈을 기울여 다듬은 국책 대학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끝났다.

검찰의 익명 투서 공개로 사태 악화

이 대학 빈영호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때는 9월12일. 파문이 한창 돌아오를 무렵인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총장은 교재를 집필한 교수들이 사법 처리에 조속히 응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기 편에서 있다고 믿은 대다수 교수들의 의사가 정반대로 나타나자 총장은 사표를 냈다. 9월8일경 경상대 교수들은 전체 교수회 차원에서 교재 집필 교수들의 사법 처리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에는 경상대 재직 교수의 절반이 넘는 3백11명이 참여했다.

교육부에 낸 빈총장의 사표는 되돌아왔다. 사표가 반려되자 임기가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은

총장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총장의 입지는 형편없이 줄어들어 갔다. 경상대의 한 교수는 "총장이 정상으로 집무하지 못해 학사 행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 일부 교수들은 벌써부터 새 총장을 뽑기 위해 총장 선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귀띔한다.

8월 말 검찰이 공개한 익명 투서는 경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학내 구성원들조차 쉬쉬해 온 교수들 간의 알력이 투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학과 나라를 걱정하는 한 교수'가 작성한 투서의 골자는 '문제 교수들은 빨갱이임이 확실하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학 당단을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투서가 공개되자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투서를 갖대로 삼아 수사를 벌여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교수 사회의 여론도, 투서를 보낸 쪽을 성토했다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9월 초순, 교수회 전체 입장

이 교재 집필 교수의 사법 처리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현재 경상대 교정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다. 교재 집필 교수들은 사태 진정을 위해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는 편이다. 투서를 보낸 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문제가 된 강의를 폐지한 대학 당국 결정에도 순순히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적 교재 사태가 남긴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안으로 끓어올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았다는 김중섭 교수(사회학)는 "가장 큰 상처는 학내 구성원간 신뢰가 무너진 데 있다. 12월에 새 총장을 선출하고 나면 그 상처는 다시 도질 게 뻔하다. 이 모든 불행이 공안 당국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한다.

검찰은 아직 이적 교재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검찰 발표 내용에 따라 경상대의 공안 상처는 김중섭 교수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끓어 터질지 모른다. ■

朴晟濤 기자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기사

[대검] 민주이념연구소 발족
한겨레, 1997.01.10 (금) 00:00

대검찰청은 10일 이적표현물 분석 등 대공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검찰총장 직속의 '민주이념연구소'(소장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를 발족했다.

이 연구소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안보기관 대비태세 연구 △이적표현물 분석 및 평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세력의 동향과 대처방안 연구 등을 주업무로 하며 공안부 소속 검사 외에 법조인 20명을 비상임위원으로, 각계 인사 20명을 자문위원으로 두게 된다. 임범 기자

민주이념연구소 발족. . . 검찰총장 직속 기관
한겨레, 1997.01.10 (금) 00:00

대공·통일 및 좌경대응 이념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주이념 연구소 (소장 崔炳國 대검공안부장)가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발족됐다.

이 연구소는 ▶남북통일 대비 검찰등 안보기관의 대처역량 강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전술 연구▶이적표현물 분석및 평가 ▶주사 파동 친북세력 대처방안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연구소는 대검공안연구관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변호사등 법조인 20명 (비상임위원)과 안보문제에 조예가 깊은 각계 전문가 20명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교과서검열] 민주이념연구소 어떤 곳인가
한겨레, 1997.11.30 (일) 00:00

대검찰청 7층의 공안부장실 맞은편에 <민주이념연구소>라고 현판이 걸린 방이 있다. 지난해 한총련 사태가 계기가 돼 지난 1월10일 문을 열었다.

좌익사상의 전파를 차단하고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며, 그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이 연구소의 주된 임무이다.

이 연구소는 재야단체나 학생운동권의 유인물 뿐만 아니라 신문기사와 인문사회과학계의 학위논문 및 도서출판물까지 이념성의 논란이 있는 문건이라면 모두 수집해 내용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적표현물 분석대상을 이렇게 넓게 잡은 데 대해 80년대 이후 우리 학계 전반이 이른바 진보를 내세운 사실상의 좌익 분위기로 오염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안기부·경찰·기무사 등의 이적표현물 수사에 대해 최종적 법률적 해석을 내리는 등 민주이념연구소가 이적표현물 검열·분석의 '단일창구'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주선희 대검 공안부장과 고영주 공안기획관이 소장·부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대검 공안연구관 7명이 상임 연구위원이다. 비상임 연구위원인 각 지점의 공안검사 22명에게는 매달 1종 이상의 출판물 등을 읽고 이적성을 분석·보고하는 임무가 맡겨져 있다.

20명의 비상임 자문위원에는 이상우 서강대 교수,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 양동안 정신문화연구원 교수와 <한국 좌익운동의 역사와 실제>라는 책을 펴낸 유동렬씨 등 우익이론가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대검의 비공식 조직에 불과한 민주이념연구소를 검찰청법상의 공식기구로 끌어올려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현대 기자

[교과서삭제] 검찰, 교과서 '체제비판' 시비
한겨레, 1997.11.29 (토) 00:00

검찰이 최근 중고교 국어와 국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필자의 글이 우리 체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생들에게 가치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교과서에서 빼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은 최근 박지동 교수(전남대) 구속 등 공안물기와 관련된 시행착오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검과 교육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각 부처 합동공안대책회의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린 유홍준 교수(영남대)의 '월출산과 남도의 봄'(기행문) 등 모두 7명의 시인·소설가·극작가의 글이 교과서에 부적절하다며 교육부에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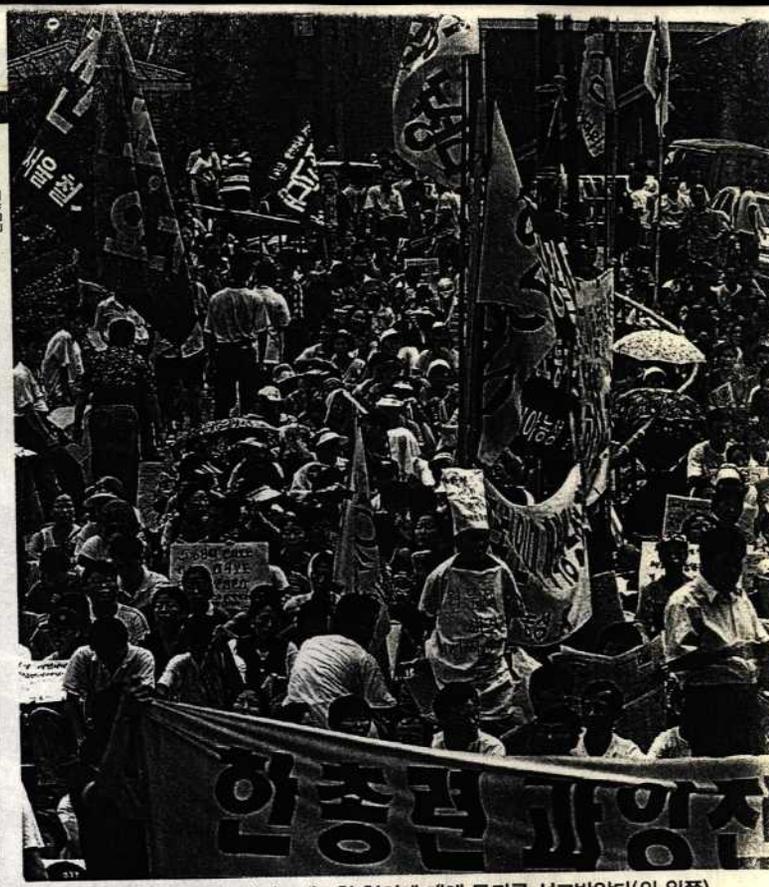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들 글의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작자의 성향이나 글에 숨겨진 의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홍준 교수의 글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 그 자체로는 문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원문에는 지리산 빨치산을 토벌하고 세운 '전승탑'을 보며 '저 탑만 보면 내 피가 끓는다'는 식의 표현이 있어 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글이라 관심을 갖고 원문을 본다면 가치관에 혼란을 빚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신경림씨의 시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대 대표적인 참여시인으로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요청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교과서 검열이 대검 산하민주이념연구소의 자문위원인 각 대학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들 글이 내용상 체제비판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검찰이 요구를 해온 만큼 오는 2000년부터 적용되는 7차 교과과정 개편작업 과정에서 삭제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교과서 외에도 군의 정훈교재에도 문제성이 있는 글이 상당수 발견돼 이를 고치도록 기무사쪽에 통보했으며, 각 대학의 사회계열 석·박사 학위논문 중에서도 반체제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재학 김의겸 기자



무죄와 유죄 사이:〈한국사회의 이해〉를 쓴 정진상·장상환 교수는 6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위 왼쪽). 그러나 한총련 소속 대학생(위 오른쪽) 대부분은 여전히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흔한 교양 서적도 이적표현물

〈시사저널〉, 목록 단독 입수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 ‘교전’ 포함...판·검사가 처벌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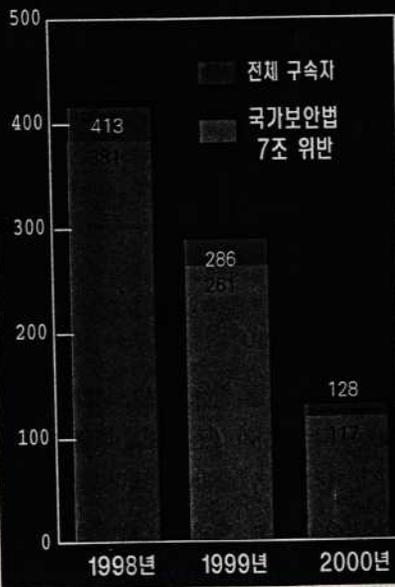
고제규 기자

unjusa@e-sisa.co.kr

“ 목록 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정 아무개씨(22)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경찰청 소속 보안 수사대가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데도 정씨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지난 5월14일 오전 7시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택에서 정씨는 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보안수사대 형사 6명은 정씨를 체포하고, 컴퓨터·디스켓·책 등 스물세 가지 물품을 압수했다.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인 정씨는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씨를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의

DJ 정권 이후 국보법 위반 구속 건수



자료:인가협

핵심으로 지목하고, 단국대 학생 8명과 함께 체포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면서 이적단체 구성이나 가입 혐의는 쏙 빼고,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기소했다. 체포 당시 사유와 기소할 때 사유가 달랐다. 검찰과 경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물 23종 가운데, 학생회 문건 2개와 책 1권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았다. 정씨는 현재 183번 수변을 달고 서울구치소에 한달째 수감되어 있다.

정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불구속으로 수사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적표현물을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검찰과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입수한 이적표현물 목록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적표현물

시사저널 2001.7.5

한두 개는 소지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저널〉은 이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도서는 총 1천2백20종에 달한다. 문건은 헤아릴 수 없다. 정씨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목록을 살펴보면, 교양 도서뿐 아니라 정치학·사회학 등 대학 전공 도서까지 포함되어 있다(표 참조).

대학에서 한국현대사 관련 과목을 수강했다면 교재나 참고 자료로 사용했을 법한, 강만길 교수의 〈한국근대사〉와 〈한국현대사〉를 비롯해 젊은 소장파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도 이적표현물로 분류되어 있다. 역사학계의 고전이 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송건호 김학준 박현재 공저)도 이적표현물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사회과학 서적뿐 아니라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 권운상씨의 소설 〈녹슨 해방구〉 역시 적을 이롭게 하는 불온 서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책들은 '교화상 열독 부적당'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교도소내 반입이 지금도 금지되어 있다.

물론 이같은 책을 소지한다고 해서 누구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판단은 검사와 판사에게 달려 있다.

대형 서점에서 '운동권' 이 구입하면 이적표현물

김대중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사범과 이적표현물 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양산되고 있다(표 참조). 인권단체는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를 대표적인 악법 조항으로 꼽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대형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책인데도,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자가 구입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로 둔갑한다. 반대에 똑같은 책을 리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면 학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사나 판사가 '관심법'을 발휘해 판단하는 셈이다.

이적표현물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은 출판인들의 발목을 붙잡기도 한다. 1998년 4월29일 대동출판사 발행인 이상관씨는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증언반'이 채록한 〈끝나지 않은 여정〉을 발행해,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씨가 발행한 책은 서울의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종로서적 등에서 누구나 살 수 있었고, 국회도서관 등 공공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었다. 풀무질출판사 편집장이자 대학강사인 양효식씨도 1998년 11월25일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으로 구속되었다. 문제가 된 레닌의 저서 〈일보 전진 이보 후퇴〉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 강사들이 번역해 대학 교재로도 쓰던 책이었다. 더구나 출간할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작자가 구속되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짧지 않은 옥살이를 했다. 1998년 11월25일 홍교선씨는 책갈피 출판사가 출간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 11종이 이적표현물로 구분되어 구속되었다. 1년도 안되어 1999년 6월9일 홍씨는 똑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홍씨가 출판한 책들은 서울대·경희대 등에서 교재나 참고 도서로 사용되었고, 책의 저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그 해 방한해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똑같은 저자의 책을 다른 출판사가 발행할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유독 홍씨가 출판하면,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렇다면 이적표현물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검·경은 각 산하 기관에 이적표현물 심사를 맡긴다. 현재 이적표현물 심사는 경찰과 검찰 소



책 제목	저자	출판사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프리드리히 엥겔스	거름
간오농민전쟁	박태원	깊은샘
집대기를 벗고서	백기완 이영희	동녘
경제학의 기초이론	편집부 엮음	백산서당
공산당 선언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백산서당
녹슨 해방구	권운상	백산서당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23	박세길	돌베개
다시 그림자에	칼보그	한울
독일 이데올로기	칼 마르크스	청년사
러시아 혁명	R.H. 카	나남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칼 마르크스	거름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민족경제론	박현재	동녘
바로 보는 우리 역사 1, 2	구로역사연구소	거름
반독립론	프리드리히 엥겔스	세길
붉은산 검은피	오봉옥	실천문학사
사회구성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이진경	아침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풍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	황석영	물빛
중국의 붉은별	에드가 스노우	두레
참된 시작	박노해	창작과비평사
철학 에세이	조성오	동녘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박현재	소나무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조진경	백산서당
8억인과의 대화	이영희	창작과비평사
포이에르비허의 독일고전철학의 총합	프리드리히 엥겔스	백산서당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칼 마르크스	소나무
조국은 하나다	김남주	창작과비평사
한국 근대사·현대사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23	서대숙	이르과실천
한국사회의 계급 연구	김진균	한울
해방전후사의 인식	송건호 외	한길사

속 양대 기구가 맡고 있다. 경찰은 공안문제연구소에, 검찰은 민주이념연구소에 이적표현물 심사를 맡긴다. 정 아무개씨를 포함해 단국대 활동가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문건과 책들도 1차로 공안문제연구소가 감정했다.

검·경 산하 연구소가 리스트 작성, 이적성 판단

공안문제연구소는 1988년 10월 문을 열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개설되기 전에는 내외정책연구소가 그 역할을 맡았다. 민주이념연구소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비해 늦게 문을 열었지만 (1997년 1월), 대검찰청 산하 기구여서 위상이 공안문제연구소보다 높다. 민주이념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경찰·국정원·기무사 등이 적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 해석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도 민주이념연구소가 개설된 것은, 1996년 연세대학교 사태 때문이다.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에 퍼진 좌익 사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급조되었다. 대검 훈령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전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공 사범의 동향을 분석·연구하기 위해서 개설되었고, 대검 공안부장이 소장을, 공안기획관이 부소장을 맡고 있다. 대검 공안연구관이 상임연구위원으로, 각 지점의 공안검사가 비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은 검찰 총장이 임명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적표현물 목록은 바로 민주이념연구소가 분류한 이적표현물에 관한 종합 자료인 셈이다.

지난 6월12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6인 소위원회를 열어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를 모두 삭제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동 여당인 자민련은 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의 보수파 역시 자민련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불투명하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불투명할수록 책장을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책장에 꽂힌 책 가운데 한두 권은 이적표현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한국 법은 법이 아니다? 번호판이 없는 주한미군 소속 차량이 서울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거리의 무법자’ 미군 차량

무보험 차 마구 질주...공무수행 중 사고 내면 처벌도 면제

고재규 기자 unjusa@e-sisa.co.kr

지난 4월21일 김중환씨(47)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청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다.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왼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차량이 김씨 차의 운전석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경기도 신갈 강남병원 응급실이었다. 그는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졌다. 교통 사고를 조사한 경기도 용인경찰서 교통수사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가해 차량에 100%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두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김씨는 단 한 번도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만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없었다. 뿐만 아니라 7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마저 김씨 본인이 감당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이라도 받았을까? 교통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은 주한미군이었다. 경북 왜관에 있는 캠프 캐슬 소속인 그 병사는 공무수행 중이었기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김씨는 급한 대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했다.

주한미군의 내규에 따르면, 미군 소속 차량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뿐이다. 한·미 행정협정 규정이나 합의 의사록에도 미군 차량의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군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꼼짝없이 자비로 처리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나중에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독일·호주에서 미군의 모든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회사가 치료비와 보상비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 주머니 털어 치료”:주한미군 소속 무보험 차량의 피해자 김중환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한미군 차량뿐 아니라, 최근에는 번호판 없는 미군 차량

까지 등장해 도시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 6월15일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무적 차량과 관련해 대니얼 R. 자니니 주한미군 8군사령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